

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

1.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“디자인, 설계, 콘텐츠,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”에 대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“디자인, 설계, 콘텐츠,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”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07-5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

구분	분류 1	분류 2	분류 3	분류 4	분류5
디자인	M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.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2. 전문디자인업	7320. 전문디자인업	73201.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. 제품 디자인업 73203. 시각 디자인업 73209. 기타 전문 디자인업
설계	M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2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	721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	7211.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.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72111.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.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.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.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.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
소프트웨어	J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	58. 출판업 62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582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5822. 시스템·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.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58221.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.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.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기타	M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2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9.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	7291. 기술시험, 검사분석업	72911.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. 기타 기술시험, 검사 및 분석업
		71. 전문서비스업	715. 회사본부,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	7153.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	71531. 경영컨설팅업

- ※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분류 등이 명확하게 위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해당사업 및 과제 공고시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되어 공고된 과제에 한하여 위 기준에 따른 연구기관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 현금지급 가능(단, 대기업 제외)

- 지식서비스 분야 업체라 하더라도 과제 공모시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과제로 분류된 과제가 아닌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.
- 지식서비스 분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여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신규·기존 직원에 대하여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현금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.. 이 때 내부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은 국토해양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.

2.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“**연구개발서비스 분야**”라 함은 다음과 같다.

- “연구개발서비스 분야”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(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)

3. 운영규정 별표 2.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중 “**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**” 라 함은 다음과 같다.

-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